

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(안)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7. 15.

제안자 : 박정자의원의외7인

1. 주 문

- (1) 결산검사위원 :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
- (2) 선임방법
 - 가.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
 - 나. 선임된 검사위원 대표자는 의원 중 연장자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5조
- 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
- 다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